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499 발의연월일: 2021. 7. 14.

발 의 자:노웅래·한준호·이병훈

이해식 · 홍성국 · 송옥주

용혜인 · 임종성 · 장경태

양기대・임호선・이수진(1)

김민철 · 이용우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동물원·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·시행('16년~) 이후 동물원·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,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·안전관리에 취약하며,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·수족관의 운영·관리 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.

한, 최근 코로나-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, 벨루가 등 동물원·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·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,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.

이에, 동물원 ·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 · 수족

관의 허가 기준(동물종별 서식환경기준, 전문인력기준 등)을 강화하고, 동물 이동전시 금지·전시 부적합종 도입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·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·수족관 관리체계 를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법의 목적에 '동물복지 증진' 및 '생명존중 가치 구현'을 명시하여 동물원·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(안 제1조)
- 나.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의 책무 명시(안 제3조)
- 다.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(안 제4조)
- 라. 동물원 · 수족관 허가제를 도입(안 제7조)
 - 1)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·안전관리에 취약함.
 - 2) 따라서 기존 동물원·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 건 충족 시 동물원·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 함.
- 마. 허가의 취소,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(안 제9조 및 제10조)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, 영업정지가 보유동 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

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
바. 동물원 · 수족관 검사관 도입(안 제11조)

동물원·수족관 허가·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 수행하도록 함.

사.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ㆍ폐원(안 제12조)

- 1) 기존 규정은 6개월 이상 휴원 시 휴원신고 의무가 부과되고,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.
- 2) 따라서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으로 강화하고,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(인수공통감염병 등)에만 사후신고를 가 능하도록 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.
- 아. 동물원 · 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(안 제14조)
 - 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('17.12.12, 자구조문체계 정비 등)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함.
 - 2) 동물원·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 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 저해 행위를 제한함.
 - 3) 정신적,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.
 - 4) 전시 부적합종(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로 인한 폐

사 또는 질병발생 위험이 있는 종)의 동물원·수족관 도입을 금지함.

- 자. 동물원·수족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 마련(안 제15조).
- 차. 질병관리 강화를 위한 조문 신설(안 제16조)
 - 1) 인수공통질병의 매개체로서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.
 - 2) 동물원·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검사결과 제출 의무 부과(안 제19조 및 제20조), 질병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의무,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보유동물의 질병관리를 강화 함.
- 카. 동물원·수족관 근무자(수의사, 사육사 등)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(안 제18조).
- 타. 거점동물원·수족관 지정·운영(안 제23조 및 제24조)

동물원 및 수족관의 질병·안전관리, 종보전연구,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권역별 거점동물원·수족관 지정 및 사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- 파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기부 금품 접수 근거 마련(안 제25조)
- 하.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정비(안 제29조 및 제31조)

법률 제 호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동물 등을 보전·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,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동물원"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·증식하고 그 생태·습성을 조사·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, 국민들에게 전시·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수족관"이란 해양동물 또는 담수동물 등을 보전·증식하고 그 생태·습성을 조사·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, 국민들 에게 전시·교육를 통해 해양동물 또는 담수동물 등에 대한 다양

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- 3. "야생동물"이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.
- 4. "해양동물"이란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.
- 5. "담수동물"이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강, 호소(湖沼) 등 물에 사는 동물을 말한 다.
- 6. "보유동물"이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·위탁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. 이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을 포함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기본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적정 전시문화 조성을 통한 보유동물 복지 증진 및 국민 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 책에 적극 협조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확보와 안전하고 건강한 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보유동물의 전시, 관리, 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5조(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환경부장관과

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 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(이하 "시·도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·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·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종합계획과 시·도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)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- 1.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사항

- ②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·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1. 시 · 도별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- 제7조(허가 등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1. 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
 - 2.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
 - 3.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
 - 4. 그 밖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시·도지사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동물 원을 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,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

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각각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④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이하 "허가권자"라한다)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,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·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 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한다.
- 제8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.
 - 1. 피성년후견인
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3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4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

- 5. 제9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가 취소(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.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- 제9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 - 2.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 - 3.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임원 중에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(改任)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4. 제2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허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과징금 처분) ① 허가권자는 제9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 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

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11조(동물원·수족관 검사관)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(이하 "검사관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1. 제7조제4항에 따른 허가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을 위한 현장조사
 - 2. 제21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점검
 - 3.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(공무원을 포함한다)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동물원 검사관의 위촉 또는 임명 : 환경부장관
 - 2. 수족관 검사관의 위촉 또는 임명 : 해양수산부장관
 - ③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관으로 하여금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시설

- ・설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시설・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・기피 또는 방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검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관의 위촉 또는 임명 절차, 검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·폐원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수 이상을 개방하여야 한다.
 -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된 휴원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와 보유동물 관리계획, 향후 개방계획(이하 "휴원 시 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 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휴원 시 관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하다.
 -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

을 폐원하려는 경우 보유동물 이관 등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렁으로 정하는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 및 폐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보유동물의 조사 등)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금지행위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각 호의 학대행위
 - 2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
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적,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

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- 4.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 - 가.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
 - 나.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어 전시에 적합하지 않은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안전관리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발생시킨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 시 제출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포획・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

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물원·수족관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.
-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포획·격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16조(질병관리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 로 검사하여야 한다.
 -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정기적 검사 결과 보유동물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 - 1. 보유동물 질병이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 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: 농림축산식품부장관
 - 2. 보유동물 질병이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수 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: 해양수산부장관

- 3. 보유동물 질병이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: 환경부장관
- 4. 보유동물 질병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: 질병관리청장
-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동물원·수족관 질병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가 필요한 대상 종, 검사항목,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생태계교란 방지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동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교란시킨 경우에는 환경 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동물원·수족관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) ① 동물원 또는 수족 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 하 "교육대상자"라 한다)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 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1.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 시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수의사(비상근

수의사를 포함한다)

- 2.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 시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육사
- 3. 그 밖에 보유동물의 안전 및 질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-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,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·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운영·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)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·보존하여야 한다.
 - 1. 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
 - 2. 보유동물의 반입, 반출,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
 - 3.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기록
 - 4. 그 밖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20조(자료의 제출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자료,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동물원·수족관에 대한 점검 등) ①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시·도지사(환경부장관은 동물원,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, 시·도지사는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1.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준수 여부
 - 2.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 무하는 자의 제14조 위반 여부
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 -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시기,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 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조치명령)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- 1.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
- 2.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원 시 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·관 리되고 있는 경우
- 3.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토 결과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4. 제21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제23조(거점동물원·수족관의 지정·운영)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권역별로 거점 동물원 또는 수족관(이하 "거점동물원·수 족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- 1.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・홍보
 - 2.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 · 검역 지원
 - 3.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 지원
 - 4. 종 보전을 위한 종 보전·증식 프로그램 운영
 - 5.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② 제1항에 따라 거점동물원·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 · 수족관이 다음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동물원·수족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(비용지원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멸종위기종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) 및 해양보호생물종(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)의 보전·복원 및 관련 조사·연구
 - 2. 야생동물 등의 생태ㆍ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ㆍ홍보
 - 3.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
 - 4.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- 제25조(기부금품의 접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·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·수족관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 -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26조(청문) 허가권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제2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③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제28조(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- 1. 제11조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- 2.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29조(벌칙) ①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
 - 2.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
 - 3. 제9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
 - 4.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 - 5. 제1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 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- 2.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·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자
- 2. 제16조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
- 3. 제19조에 따른 기록을 관리·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한 자
- 4.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한 자
- 5.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자
- 6. 제2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0조(양벌규정)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・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・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・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・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3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- 2.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
 - 3. 제1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- 4.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
 - 5.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
 - 6.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
 - 7.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 - 8.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 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하거나, 해당 교육에 드 는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부터

적용한다.

- 제3조(운영·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 개 정규정에 따른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 항을 기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 일부터 5년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 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5조(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.
- 제6조(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- 제7조(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12조제5항 중 "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"으로 한다.